자동차공학은 한국의 힘 !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년도 편집담당 부회장 결원에 따른 보선 입후보 등록 공고

우리나라 자동차공학을 대표하는 우리학회에서는 정관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편집담당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회장 정수

- 편집담당 부회장 : 1명 (학계소속)

2. 입후보자 자격

- 부회장 : 학회 부회장, 이사, 지회장 또는 부문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종신회원

3.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1)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이력서 1부 (소정양식, 2매 이내, 사진포함)
   - 소견서 1부 (소정양식, 2매 이내)

2) 접수기간 : **4.25(월) 14:00 ~ 5.10(화) 18:00**

4. 제출방법 및 제출처

1) 제출방법 : 이메일

2) 제출 및 문의 : 한국자동차공학회 서윤주 국장 (T. 02-564-3971, e-mail. auto@ksae.org)

5. 선출일정

일정	내용	비고
4.25(월)	입후보자 등록 공고	· 제5차(5월) 이사회 개최 24일전 · 정관 제14조 제3항
5.10(화)	입후보자 등록 마감	· 제5차(5월) 이사회 개최 9일전
5.12(목)	입후보자 홈페이지 공지	· 제5차(5월) 이사회 개최 7일전
5.19(목)	2022년도 편집담당 부회장 선출 및 인준	· 제5차(5월) 이사회

6. 선출방법

- 2022년도 제5차(5월) 이사회에서 선출
- 2022년도 제5차(5월) 이사회에서 임원 인준

7. 관련규정

- 정관 제14조

8. 기타사항

1) 학계소속 부회장의 연임은 최대 3년으로 중임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및 연구계 연임제한 없음).
2) 학계와 연구계 소속 회장 및 부회장은 소속기관의 정년퇴직일 이내에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입후보 등록서류 제출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은 불가합니다.
5) 입후보자를 열거하는 기표번호 순서는 등록신청 접수순으로 부여합니다.

붙임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2. 이력서
3. 소견서
4. 회장단 선출 관련규정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권 상 순

[붙임 1]

편집담당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근 무 처	
직 위	
신청분야 (■표시)	□ 부회장 (학계소속 : 4년제 대학)

본인은 한국자동차공학회 종신회원으로서 2022년도 한국자동차공학회 □ 부회장 입후보자로 등록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자동차공학회 귀중

접수번호		접수일	

[붙임 2]

(□ 부회장) 입후보자 이력서

성 명				사진
근 무 처		부 서		
직 위		생년월일		
학 력				
학회경력				
일반경력				
수상경력				
연구개발 실적				

[붙임 3]

기표번호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사진
근 무 처		
직 위		

2매 이내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 정관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1인 이내
3. 이사 20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필요시에 별도로 무임소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종신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 (무보수)
학회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잔여임기가 1/3 이상 남았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1/3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하며, 감사는 차점자로 보선한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⑤ 학회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만이 법원등기를 하도록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 1개월 전에 개최하는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단,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한 부회장, 감사, 이사의 충원은 예외로 한다.
②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의 자문을 받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③ 감사는 학생회원을 제외한 개인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